



야생동물과 관련된 기관 연락처

- **환경오염 행위 목적 신고**
- (국번없이) 128
-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 **야생생물 및 서식지 안전 제보**
- 환경부 : 1577-8866
- **천연기념물 지정 야생생물 및 서식지 안전 제보**
- 문화재청 : 1600-0064
-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불법거래, 사육 발견시**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 국립공원관리공단 : 1670-9201
-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단속**
- 산림청 : 1588-3249
- **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
- 환경부 : 1577-8866
-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7114

부상당한 야생조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요?

조난·부상 등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면 가까운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에 신속히 연락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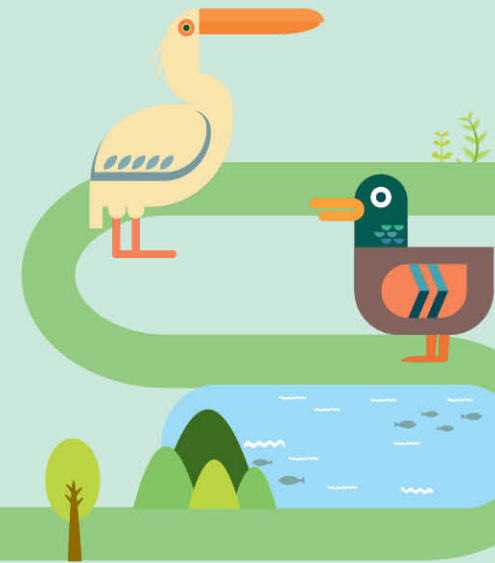
지역	소재지	연락처
서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8659
부산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	051-209-2091
대전	대전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	042-821-7930
울산	울산시 남구 옥동 506-3	052-256-5322
경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통천길 132-93	031-8008-6212
강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033-250-7504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양청4길 45	043-216-3328
충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1	041-334-1666
전북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번지	063-850-0983
전남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922-15	061-749-4800
경북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50-44	054-840-8250
경남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4-9575
제주	제주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064-752-9982
인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20(솔찬공원내)	032-858-9702

가까운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8 환경신문고, 가까운 시·군·구 환경부서나 해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신고 하세요.

야생조류에게 농약·유독물 살포는 이제 그만!

새가 날아오는 곳은 사람에게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야생조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 A



Q 조류독감(AI : Avian Influenza)으로 죽은 야생조류 보다 농약중독으로 죽은 야생조류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A 2017년 한해 동안 신고 접수한 야생조류 폐사는 총 1,215건(1,971마리)입니다. 이 중 AI 바이러스 검출은 27마리로 1.3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급성 농약중독, 충돌 등 사고사, 생태계 내 자연사로 추정됩니다. 특히 평균 20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 폐사의 경우, 85% 이상이 농약중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 야생조류에서 농약이 왜 검출될까요?

A 야생조류는 물고기, 조개 등 수중생물을 잡아먹거나 과일, 벌씨 등을 섭취합니다. 식물을 먹이로 하는 경우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이 미량 검출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야생조류가 폐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고의적으로 농약을 벌씨 등에 섞어 살포한 경우, 고농도의 농약을 섭취하게 되어 폐사하게 됩니다. 또한 상위포식자인 독수리(멸종위기종) 등이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조류를 섭취하여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에게 농약, 유독물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해서는 안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9조제3항)

•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외 야생생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유독물·농약을 살포한 자나, 농약중독으로 확인·의심 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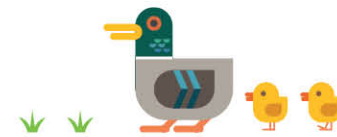
신고기관

가까운 시·군·구 환경부서나 해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연락합니다.



신고방법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야생조류 농약·유독물 살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 농약 살포한 자를 신고하였을 때 포상금

농약, 유독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농약중독 야생동물을 신고하였을 때 포상금

농약·유독물 중독으로 확인되거나, 농약중독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5만원을 지급합니다

- 1 한 장소, 한 시점에 5개체 이상 농약 중독으로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지급합니다.
- 2 농약중독 진단기관으로부터 농약중독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 3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폐사체 부검 시 식도에서 검출된 벌씨) (기러기 및 오리류(청둥오리) 집단폐사)